

의안번호	2200127
의 퇴 인	강민국 의원
회 답 일	2024. 6. 11.
추 계 번호	24B0309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의5 (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) 신설	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※ 안 제23조의2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현행법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¹⁾ 또는 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²⁾가 위치한 지역 내에 “투자진흥지구”를 지정할 수 있음 •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23조의6 (세제지원) 신설	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³⁾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의5 신설 (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「우주항공 진흥법」 제22조(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)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.
- 2) 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 제8조의2(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·지원)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(이하 "특화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3)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0127)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0129)의 의결을 전제로 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23조의6 신설 (세제지원)	• 미대상: 이 조항은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0127)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0129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조세 감면 관련 사항은 해당 법안의 비용추계 대상임

2. 상세 사유

□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(안 제23조의5 신설)

- 개정안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「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」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,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대학⁴⁾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지원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은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, 현재로서는 지원 대상, 지원 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가 곤란함

4)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대학"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

나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
다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관련 사업 현황⁵⁾

□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(총사업비 규모 적정성 검토중)

-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 정부·지자체·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, 세계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
 - (위성특구(경남)) 다양한 위성 개발 지원을 위해 발사궤도·전자파 등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갖춘 ‘위성개발혁신센터’ 구축(’24~’26)
 - (발사체특구(전남)) 민간 로켓 발사장 선제 구축,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‘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’ 구축(’24~’27)
 - (연구·인재특구(대전)) 우주항공 분야 실험·실습 심의 교육 플랫폼으로서 ‘우주인재양성센터’ 및 관련 R&D 지원(’24~’28)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□ 항공특화단지 구축

- 확대되는 新 항공산업 대응을 위한 특화단지 확보 및 차세대 비행체 시험 인프라 구축 추진
 - (항공산업특화단지) 항공 앵커기업의 복합재 기체 구조물 수주 확대 전망에 따라 특화단지 추가 지정·지원 추진
 - (항공시험인프라) AAM, 무인기, 엔진 등 연구개발 시 다양한 시험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시험 인프라 확충
- ※ 현 ‘국가항공비행성능시험센터(고흥)’ 외에 민간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가 인프라 확보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5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

[참고자료 2]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례('14~'19년)⁶⁾

□ 사업개요

- 위치: 사천 종포일반산단 + 임대전용산단
- 면적: 769천m²(23.3만평) * 종포일반산단: 377천m², 임대전용산단: 392천m²
- 사업비: 410억원(국비 250, 도비 50, 사천시 40, 민자 70)
 - * 사천시 시유지 9,000평(59억원 상당), 경남TP 2,000평(20억원 상당) 미포함
- 사업기간 : '14. 11월 ~ '19. 10월(5차년도)
- 사업시행자 : 국가직접지원사업[전담기관 : KIAT*, 주관기관 : KAIA*]
 - * KIAT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KAIA :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

□ 사업내용

(단위: 억원)

세부사업	사업기간	사업비(억원)					사업내용
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
합 계		410	250	50	40	70	5개 사업
공익용 항공표면처리시설	'14~'17	206	136			70	부지 16,588m ² , 표면처리공장 8,772m ² 및 시설 구축(종포산단 내)
공용 시험평가장비동 지원	'14~'18	63	33 (장비)	30 ('17 20억 건축비 '18 10억)			시험평가장비동 1,534.76m ² 및 장비 구축(항공우주센터내)
항공 상생 물류시스템 구축	'17~'19	74	34 (장비)	20 (사천시교부)	20		부지 13,563m ² , 공용물류센터 4,931m ² 및 보관장비/운송장비 등(종포산단 내)
항공인력교육 및 육성	'14~'19	19	19				교육 및 프로그램개발
기업지원	'15~'17	28	28				R&D 지원('15년 3개사, '16년 5개사)

주: 항공상생물류시스템 구축(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) 사천시비 부지매입비 및 19년 2회 추경 2억 원 제외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6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

□ 추진실적

- 대통령 지역공약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반영('12년)
-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(안) 국회 본회의 통과('13. 3. 26.)
- 사천 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 공고(산업부) ('14. 8. 7.)
-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협약 체결(산업부↔지자체↔협회)('14. 11월)
- 항공인력 교육 및 육성사업(1~4차년도) ('15. 2월 ~'18. 7월)
- 대형표면처리시설 건축공사 준공 ('17. 3월)
- 공용 시험·평가 지원동 건축 준공 ('18. 6월)
- 공용 시험·평가 지원동 내 시험평가장비 구축 ('18. 7~12월)
- 항공인력 교육 및 육성사업 완료(1~5차년도) ('14.11월 ~19.10월)
- 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('19. 2~10월)
- 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 개소식('19. 11. 27.)